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277
-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찬성자 12명)
- 발 의 일 : 2017년 11월 15일
- 회 부 일 : 2017년 11월 16일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 심의위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견해가 시 정책 결정과정에 장기·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이 저해되고 정책방향이 특정인 시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아울러,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의 예외로 하여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위촉해제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나. 법령에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위촉의 예외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 11. 21 ~ 11. 28)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의 중복 위촉 최소화 및 법령에서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위촉의 예외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19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은 4,030명에 달하는 상황임.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 9월
위원회수	116	113	103	127	136	148	152	185	191
증 감	△6	△3	△10	24	9	12	4	33	6

〈위촉위원 현황〉

(단위 : 개, 명, %)

연도	위원회 수	총위원수	당연 임명직	위촉직 위원			비고
				소계	남성	여성	
2017년 9월	191	4,637	607	4,030	2,382	1,648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¹⁾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²⁾에는 자문위원을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를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동일위원의 위원회 2개 초과 제한 및 위촉해제 후 비위촉 기간에 따른 연임 의제
(안 제8조제3항)

- 동 조례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동일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8조제3항은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위촉해제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시의원, 한정된 특수전문분야 위원,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 ----- -----,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서울시에는 현재 191개 위원회(2017년 9월 기준)가 있으며, 위촉 위원은 4,030명이고,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50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촉위원 현황〉

연도	총계	당연·임명직	위 촉 직								위 촉 직	
			소 계	학 계	전문가	민간기업	시민 사회단체	시의원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기 타 (일반시민 등)	여성	장애인
2017.9	4,637	607	4,030	1,125	1,020	311	378	242	325	629	1,648	51
			(100%)	(27.9%)	(25.3%)	(7.7%)	(9.4%)	(6.0%)	(8.1%)	(15.6%)	(41%)	(1.3%)
2016	3,911	536	3,375	834	1,033	209	399	216	282	402	1,302	52
			(100%)	(24.7%)	(30.6%)	(6.2%)	(11.8%)	(6.4%)	(8.4%)	(11.9%)	(38.6%)	(1.5%)

〈위촉직 중 2개 이상 위원회 참여 현황〉

(단위 : 명)

연도	중복수	총계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7개	8개	9개	10개 이상			
2017년 9월		505	384	118	3	-	-	-	-	-	-	-	-	
2016년		352	264	79	9	-	-	-	-	-	-	-	-	
2015년		373	248	105	13	5	2							
2014년		318	228	54	20	11	5							

- 위촉위원 중 위촉기간 6년을 초과한 위원은 51명으로 15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임 현황〉

(단위 : 명)

연도	연 임	계	6년 초과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6년 초과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2017년 9월		51	33	12	6	-				
2016년		134	80	44	8	2				
2015년		133	86	36	10	1				
2014년		151	105	40	5	1				

- 개정안은 소수 위원의 독점적인 참여를 막고 다양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정책 결정의 객관성 및 개방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첫째, 이미 동 조례에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소수 위원의 장기·지속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 둘째,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위촉위원 참여를 2개의 위원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인지, 타 위원회와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 ※ 서울시 위원회 중 서울시장의 위원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25개이고, 행정 1부시장 28개, 행정2부시장 14개 등임(참고 1)
- 셋째, 3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위원장의 변경으로 위원에서 해촉되어야 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저해 여부 등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장이 동일한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2개 초과 위촉금지)하는 것은 위원회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용대상 위원회가 94개(전체 191개 위원회의 약 50%)나 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과 위촉해제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은 법제처의 연임에 대한 법령해석과 맞지 않으며,
 - ※ 법제처 법령해석 :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지 않게 다시 위촉하는 것을 연임이라 보기는 어려움(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 사례)
- 해촉 후 재위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 ‘중임제한’ 규정을 두거나, ‘위촉해제 후 일정기간내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중복위촉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 안 제8조제3항제4호는 법령에서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p><신 설></p> <p>④ ~ ⑥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u>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u>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개정안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동 규정의 예외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 다만,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설계·환경 등 특정분야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참고 1 참조).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총 30명(공무원 4, 시의원 5, 전문가 21) '17.12월 6일, 2명 총원(예정) 포함

분야 인원	도시계획(6)				건축(3)			시민 단체	도시 경제	도시 방재	교통	역사 문화	법조 인	구청 장	환경	언론 인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도시 재생	도시 경관	건축 설계	건축	주택 정책									
21	2	1	1	2	1	2	1	1	1	1	2	2	1	1	1	1

○ 동 조 제3항제2호에도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이 있는바, 예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동 조항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도시계획위원회 특정분야 위원에게만 중복위촉·장기 연임이 가능하게 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분야 위촉 위원을 확대·보강하여 중복위촉이나 장기연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적용례의 필요성 여부

○ 개정안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현재 조례 개정 직후 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어 해촉되어야 하는 위촉위원이 총 36명 수준임(참고 자료 2 참조).

-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에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 조례 시행 당시 각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되어 있는 위촉위원의 강제 해촉 문제 및 각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적용례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개정안	수정의견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 자료 1

동일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 현황

위원회 연번	현소속및직위	성명	위원회명	구분	
				당연직	위원장
1	서울시장 (25개)	박원순	DMC기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기부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먹거리 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물류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생활권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서울협치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에너지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장애인복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정보화전략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토지수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행정심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위원회 연번	현소속및직위	성명	위원회명	구분	
				당연직	위원장
2	행정1부시장 (28개)	류경기	경제민주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장
			공정무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교통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시민건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식재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희망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위원회 연번	현소속및직위	성명	위원회명	구분	
3	행정2부시장 (14개)	이제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공동구협의회	당연직	위원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도시재생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도시재정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물순환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청계천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4	물순환안전국장 (3개)	권기욱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5	행정국장 (2개)	김인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6	도시계획국장 (2개)	김학진	좋은빛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7	시민건강국장 (4개)	나백주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식품지흥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8	경제기획관 (2개)	박대우	사업조정심의회	임명직	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장
9	여성가족정책실장 (2개)	엄규숙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당연직	위원장
10	기획조정실장 (3개)	윤준병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1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개)	이홍섭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12	주택건축국장 (3개)	정유승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한옥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13	도시재생본부장 (2개)	진희선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14	기후환경본부장 (2개)	황보연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참고 자료 2

동일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의 중복 현황

연번	성명	중복	최초위촉일	위촉기간			위원회명
				시작일	종료일	기간	
1	강○욱	3	2016-05-03	2016-05-03	2018-05-02	1년11개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강○욱	3	2016-09-11	2016-09-11	2018-09-10	1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김○희	3	2012-03-01	2016-03-01	2018-02-28	5년11개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4	김○희	3	2016-05-30	2016-05-30	2018-05-29	1년11개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5	김○화	4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6	김○화	4	2015-11-23	2015-11-23	2017-11-22	1년11개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	김○희	4	2014-03-19	2016-03-19	2018-03-18	3년11개월	물순환시민위원회
8	김○희	4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9	김○금	3	2014-02-18	2016-01-19	2018-01-18	3년11개월	도시공원위원회
10	김○금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11	김○주	4	2016-09-30	2016-09-30	2018-09-29	1년11개월	경제민주화위원회
12	김○주	4	2017-11-20	2017-11-20	2019-11-19	1년11개월	행정심판위원회
13	김○희	3	2017-11-02	2017-11-02	2019-11-01	1년11개월	먹거리 시민위원회
14	김○희	3	2016-06-07	2016-06-07	2018-06-06	1년11개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15	김○정	3	2017-11-02	2017-11-02	2019-11-01	1년11개월	먹거리 시민위원회
16	김○정	3	2016-06-07	2016-06-07	2018-06-06	1년11개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17	박○규	3	2016-03-01	2016-03-01	2018-02-28	1년11개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8	박○규	3	2017-04-01	2017-04-01	2019-03-31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19	박○정	3	2016-03-01	2016-03-01	2018-02-28	1년11개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	박○정	3	2017-04-01	2017-04-01	2019-03-31	1년11개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21	박○영	3	2016-03-01	2016-03-01	2018-02-28	1년11개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2	박○영	3	2016-05-19	2016-05-19	2018-05-18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23	이○영	3	2016-12-21	2016-12-21	2018-12-20	1년11개월	정보화전략위원회
24	이○영	3	2017-04-23	2017-04-23	2019-04-22	1년11개월	지적위원회
25	이○수	3	2016-02-24	2016-02-24	2018-01-31	1년11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6	이○수	3	2016-02-01	2016-02-01	2018-01-31	1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27	이○숙	3	2017-03-10	2017-03-10	2019-03-09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28	이○숙	3	2014-01-01	2016-05-01	2018-04-30	4년3개월	물류정책위원회
29	정○근	3	2016-12-13	2016-12-13	2018-12-12	1년11개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30	정○근	3	2017-05-14	2017-05-14	2019-05-13	1년11개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1	정○정	3	2017-03-15	2017-03-15	2019-03-14	1년11개월	희망경제위원회
32	정○정	3	2017-08-09	2017-08-09	2019-08-08	1년11개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33	구○훈	3	2017-11-14	2017-11-14	2019-11-13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34	구○훈	3	2017-11-22	2017-11-22	2019-11-12	1년11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5	구○훈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36	김○호	3	2015-12-01	2015-12-01	2017-10-18	1년10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7	김○호	3	2015-10-20	2017-10-20	2019-10-19	3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38	김○호	3	2016-07-19	2016-07-19	2018-07-18	1년11개월	역사도시서울위원회
39	김○경	3	2015-02-03	2017-02-03	2019-02-02	3년11개월	건축위원회
40	김○경	3	2015-03-10	2017-03-10	2019-03-09	3년11개월	도시재정비위원회
41	김○경	3	2012-09-11	2016-09-11	2018-09-10	5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42	김○순	3	2017-03-03	2017-00-00	2018-03-17	1년0개월	성평등위원회
43	김○순	3	2017-03-03	2017-03-03	2018-03-17	1년0개월	성평등위원회
44	김○순	3	2012-08-31	2016-08-31	2018-08-30	5년11개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45	김○란	3	2014-03-19	2016-03-19	2018-03-18	3년11개월	물순환시민위원회
46	김○란	3	2017-10-25	2017-10-25	2019-10-24	1년11개월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47	김○란	3	2004-09-11	2016-09-11	2018-09-10	13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48	김○열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49	김○열	3	2015-03-10	2017-03-10	2019-03-09	3년11개월	도시재정비위원회
50	김○열	3	2012-08-01	2016-08-01	2018-07-31	5년11개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51	김○란	3	2015-11-14	2015-11-14	2017-11-13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52	김○란	3	2015-12-01	2015-12-01	2017-11-13	1년11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53	김○란	3	2016-10-25	2016-10-25	2018-10-24	1년11개월	도시재정비위원회
54	박○호	3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5	박○호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56	박○호	3	2016-09-11	2016-09-11	2018-09-10	1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57	박○근	3	2014-05-22	2016-05-30	2018-05-29	4년0개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58	박○근	3	2014-08-01	2016-08-01	2018-07-31	3년11개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59	박○근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60	변○진	3	2017-01-01	2017-01-01	2018-12-31	1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61	변○진	3	2017-11-02	2017-11-02	2019-11-01	1년11개월	먹거리 시민위원회
62	변○진	3	2017-02-27	2017-02-27	2019-02-27	2년0개월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63	서○경	3	2014-02-18	2016-01-19	2018-01-18	3년11개월	도시공원위원회
64	서○경	3	2014-08-01	2016-08-01	2018-07-31	3년11개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65	서○경	3	2017-04-01	2017-04-01	2019-03-31	1년11개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66	송○주	3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67	송○주	3	2016-07-01	2016-07-01	2018-06-30	1년11개월	청계천시민위원회
68	송○주	3	2004-09-11	2016-09-11	2018-09-10	13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69	신○진	3	2012-02-07	2016-01-19	2018-01-18	5년11개월	도시공원위원회
70	신○진	3	2017-06-28	2017-07-01	2020-06-30	3년0개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 위원회
71	신○진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72	오○현	3	2017-03-20	2017-03-20	2019-03-19	1년11개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73	오○현	3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74	오○현	3	2017-03-15	2017-03-15	2019-03-14	1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75	우○선	3	2016-05-19	2016-05-19	2018-05-18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76	우○선	3	2015-06-01	2017-06-01	2019-05-31	3년11개월	문화재위원회
77	우○선	3	2016-06-27	2016-06-27	2018-06-26	1년11개월	한옥위원회
78	윤○렬	3	2014-11-12	2016-10-15	2018-10-14	3년11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79	윤○렬	3	2014-10-15	2016-10-15	2018-10-14	3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80	윤○렬	3	2014-10-31	2014-10-31	2018-09-30	3년10개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81	이○환	3	2016-05-19	2016-05-19	2018-05-18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82	이○환	3	2017-11-22	2017-11-22	2018-05-18	0년5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83	이○환	3	2017-09-12	2017-09-12	2019-09-11	1년11개월	도시재정비위원회
84	이○주	3	2016-04-05	2016-04-05	2018-04-04	1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85	이○주	3	2013-09-16	2015-11-23	2017-11-22	4년2개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86	이○주	3	2016-10-14	2016-10-14	2018-04-04	1년5개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87	이○현	3	2017-03-20	2017-03-20	2019-03-19	1년11개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88	이○현	3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89	이○현	3	2017-11-02	2017-11-02	2019-11-01	1년11개월	먹거리 시민위원회
90	이○화	3	2015-02-03	2017-02-03	2019-02-02	3년11개월	건축위원회
91	이○화	3	2015-03-11	2015-03-11	2019-02-02	3년10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92	이○화	3	2012-08-01	2016-08-01	2018-07-31	5년11개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93	이○성	3	2017-11-22	2017-11-22	2019-11-14	1년11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94	이○성	3	2017-11-15	2017-11-15	2019-11-14	1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95	이○성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96	이○수	3	2017-03-20	2017-03-20	2019-03-19	1년11개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97	이○수	3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98	이○수	3	2014-03-19	2016-03-19	2018-03-18	3년11개월	물순환시민위원회
99	이○형	3	2014-11-12	2016-10-01	2018-09-30	3년10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00	이○형	3	2014-10-01	2016-10-01	2018-09-30	3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101	이○형	3	2014-10-31	2014-10-31	2018-09-30	3년10개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02	임○지	3	2016-10-25	2016-10-25	2018-10-24	1년11개월	서울협치협의회
103	임○지	3	2015-11-23	2015-11-23	2017-11-22	1년11개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04	임○지	3	2015-03-30	2017-08-09	2019-08-08	4년4개월	청년정책위원회
105	전○용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106	전○용	3	2012-03-23	2012-03-23	2018-06-30	6년3개월	청계천시민위원회
107	전○용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108	조○래	3	2016-10-05	2016-10-05	2018-10-04	1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109	조○래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110	조○래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111	조○미	3	2017-06-01	2017-06-01	2019-05-31	1년11개월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112	조○미	3	2012-03-30	2012-03-30	2018-03-29	5년11개월	청소년육성위원회
113	조○미	3	2013-04-15	2016-04-01	2018-03-31	4년11개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14	주○철	3	2016-06-25	2016-10-25	2018-10-24	2년3개월	DMC기획위원회
115	주○철	3	2015-07-31	2017-01-13	2019-01-12	3년5개월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116	주○철	3	2016-12-21	2016-12-21	2018-12-20	1년11개월	정보화전략위원회
117	최○진	3	2016-03-19	2016-03-19	2018-03-18	1년11개월	물순환시민위원회
118	최○진	3	2017-04-01	2017-04-01	2019-03-31	1년11개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119	최○진	3	2016-07-01	2016-07-01	2018-06-30	1년11개월	청계천시민위원회
120	한○호	3	2017-01-01	2017-01-01	2018-12-31	1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21	한○호	3	2016-07-01	2016-07-01	2018-06-30	1년11개월	청계천시민위원회
122	한○호	3	2012-03-16	2016-03-16	2018-03-15	5년11개월	한강시민위원회
123	한○동	3	2016-03-01	2016-03-01	2018-02-28	1년11개월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124	한○동	3	2016-05-19	2016-05-19	2018-05-18	1년11개월	건축위원회
125	한○동	3	2014-05-23	2016-05-23	2018-05-22	3년11개월	한옥위원회
126	허○진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127	허○진	3	2015-06-01	2017-06-01	2019-05-31	3년11개월	문화재위원회
128	허○진	3	2015-06-26	2017-06-26	2019-06-25	3년11개월	한옥위원회
129	홍○란	3	2015-03-04	2017-03-04	2019-03-03	3년11개월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130	홍○란	3	2015-01-01	2017-01-01	2018-12-31	3년11개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31	홍○란	3	2017-06-23	2017-06-23	2019-06-22	1년11개월	도시재생위원회
132	황보○원	3	2010-10-01	2016-10-01	2018-09-30	7년11개월	도로명주소위원회
133	황보○원	3	2017-04-23	2017-04-23	2019-04-22	1년11개월	지적위원회
134	황보○원	3	2015-03-03	2017-03-03	2019-03-02	3년11개월	지적재조사위원회
135	김○호	4	2016-04-27	2016-04-27	2018-04-04	1년11개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36	김○호	4	2016-04-05	2016-04-05	2018-04-04	1년11개월	도시계획위원회
137	김○호	4	2016-09-11	2016-09-11	2018-09-10	1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138	김○호	4	2016-05-01	2016-05-11	2018-04-04	1년11개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39	윤○화	4	2012-03-08	2017-10-01	2019-09-30	7년6개월	교통위원회
140	윤○화	4	2017-03-20	2017-03-20	2019-03-19	1년11개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141	윤○화	4	관련 기관 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안전관리위원회
142	윤○화	4	2012-07-01	2012-07-01	2017-12-31	5년5개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참고 자료 3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필수 위촉 위원회 >

연번	위원회명	의무위촉 인원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계획위원 중 도시계획·설계·환경 전문가 각 1인 이상
2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임대주택법)	- 도시계획위원 중 도시계획·설계·환경 전문가 각 1인 이상
3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도시계획위원 중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 각 1인 이상
4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도시계획위원 중 9명
5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특별법)	- 총 25명중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30% 이상 위촉
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계획법)	- 총 25명중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이 1/3이상

<관련 법령>

법령명	관련 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특별법	제38조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4.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토계획법	제25조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

	<p>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p>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p> <p>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공공주택 특별법</p>	<p>제33조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p> <p>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3. 생략</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p>
<p>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p>	<p>제15조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p>
<p>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p>	<p>제32조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p> <p>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p> <p>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축인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p>
<p>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p>	<p>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p> <p>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p> <p>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p>